

아시안 이유에스 코리아 (Asian EUS Korea) 회칙

제정: 2015년 4월 1일

개정: 2025년 6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아시안 이유에스 코리아'로 칭하고 영문표기는 "Asian EUS Korea"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방이동, 동산빌딩 4층) ACROFFICE 송파센터 452호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활동

제3조 목적

본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내시경초음파학자들의 학술단체로 교육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회의 목적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① World Endoscopy Organization (WEO) 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 학술활동
- ② 내시경초음파 관련 학술대회 및 우수 교육센터에서의 교육 (Train the Trainers)
- ③ 각국에서 지역 내시경초음파 전문가들을 초빙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초보자들을 위한 워크샵 개최
- ④ 초급부터 고급 분야에 걸친 내시경초음파 교육전략개발 및 교육계획수립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아시안 이유에스 코리아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정기적인 출석과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내시경초음파 관련 종사자.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행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모든 경우에 제약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2) 명예회원: 정회원은 아니지만 내시경초음파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한 개인으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해진다. 회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6조 회원 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다른 회원의 추천이 있어

야 한다. 입회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가입이 결정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비납부: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사무국에서 미납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표권 및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연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한다.
- 3) 회원양도: 회원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명예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며 발언권만 갖는다.

제9조 자격의 상실

별다른 사유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탈퇴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탈퇴를 원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통지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시 기납부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교육이사 1인, 섭외/홍보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모든 임원은 2년마다 선출되고 선출일로부터 2년간 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3) 전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 5)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 6) 임원후보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천되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 7) 회장은 이사회와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선출한다. 여기서 과반수는 백지투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전체 유효투표자의 1/2 이상을 의미한다. 첫번째와 다음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제외하고 마지막 한 명이 과반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한다. 동수의 득표의 경우에도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한다.

- 8) 각 이사는 회장이 유자격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각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회 주관의 모든 행사를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주재한다.
- 총무이사는 이 회의 운영과 기획을 담당한다.
-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를 상설하여 학술대회 및 모든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 교육이사는 회원의 초기 및 재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섭외/홍보이사는 학회 및 학회행사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의 추진 및 조정을 담당한다.
- 편집이사: 단체 학술지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및 정기 간행을 담당한다.
- 감사: 본 회의 운영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 총회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다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EUS summit 기간 중에 1회 총회를 개최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연간 예산 및 재무제표 보고 및 연간 활동 승인
- 3) 임원 선임 및 해임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 5) 이사회에서 제기하는 안건
- 6) 기타 회장이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제11조에 명시한 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의 안건 결정
- 2) 명예회원의 추대
- 3) 일반회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에 관한 결의
- 4) 기타 각 임원이 제기한 중요 사항

제16조 위원회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1)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언을 할 책임이 있다.
- 2) 운영위원회: 국내 내시경초음파 전문가 중에 활동적인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자문위원

회와의 협의 하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한다.

- ① 본 회의 목적과 교육목표를 포함한 활동
- ② 교육계획 및 내용 기획, 검토
- ③ 대외적인 국제기관과의 협력

3) 분과위원회: 이사회에서 필요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구성은 이사회회의승인 하에 회장이 결정한다.

- (1) 조직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편집위원회
- (4) 홍보위원회
- (5) 섭외위원회

제17조 위원회 결의 및 실효성

위원회의 안건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13조의 안건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되지 아니하면 부결된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등록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와 등록비 등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감사

본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 1인의 감사를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및 부칙

제21조 회칙의 개정

- 1)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정회원의 2/3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변경 또는 개정이 가능하다.
- 2) 본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5. 6. 27일 개정되었다.

제22조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